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89

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 송갑석 · 이용선 · 이개호

임종성 · 김윤덕 · 정춘숙

최인호 · 이규민 · 박 정

이장섭 · 이성만 · 안민석

인재근 · 조오섭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 법으로 취득·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.

'합리적인 노력'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업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노력해야 함. 그런데 2019년 1월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"영업비밀"의 정의에서 '합리적인 노력'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.

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 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3호).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가목 중 "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"를 "비밀로"로 한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"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"란	3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	
가.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	가
니하고 <u>합리적인 노력에</u>	<u>비밀로</u>
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	
중소기업기술(이하 "침해	
대상 중소기업기술"이라	
한다)을 부정한 방법으로	
취득·사용 또는 공개(비밀	
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	
알리는 것을 포함한다. 이	
하 같다)하는 행위	
나.•다. (생 략)	나.•다. (현행과 같음)